

유럽공동체지침안의 환경책임

이 승 우*

《 차 례 》

- I. 머리말
- II. 환경침해의 개념
- III. 책임요건
- IV. 인과관계
- V. 원인자의 다수성
- VI. 법적 효과
- VII. 환경개선의 목표와 실행
- VIII. 맺음말

I. 머리말

유럽공동체위원회는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녹색(綠書: Grünbuch)와 백서(白書: Weißbuch)에 따른¹⁾ 지침안을 제시했다.²⁾ 동 위원회는 회원국차원에서 환경침해시 개선보장을 위해 적용하기에 용이한 통일안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³⁾ 이 지침안은 회원국간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른 지침과 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구성되어 있다.⁴⁾ 이 지침안에 환경위험폐기물처리를 위해서 제정된 미국의 ‘종합환경책임보상법

* 전남대학교 전임연구원 · 법학박사

- 1) Grünbuch, KOM(93)47 endg.= BR-Drs. 436/93; Weißbuch, KOM(2000)66 endg.
- 2) 유럽공동체위원회(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환경개선과 환경침해방지를 위한 환경책임에 대한 유럽의회 지침안(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Umwelthaftung zur Vermeidung von Umweltschäden und zur Sanierung der Umwelt), Brüssel, KOM(2002)17, 2002/0021(COD); Hatta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1 Env. Liability 3(2002).
- 3) 지침안(Richtlinievorschlag), S. 4 f.; 지원원칙(Subsidiaritätsprinzip)에 대해서 Bergkamp, The Proposed EC Environmental Liability Regime and EC Law Principles, 6. Env. Liability 251, 253(2001).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CERCLA)'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⁵⁾ 그 규제대상은 특정되어 명확하게 제한될 수 있는 환경침해이다. 불명확한 환경침해나 손해는 제외된다.⁶⁾ 여기에서는 보호의 객체인 동물계(Fauna), 식물계(Flora), 하천(Gewässer), 토양(Böden)에 영향을 주는 장애사례의 파악이 중요하다.⁷⁾ 책임요건과 관련해서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대처하면서 특정환경위험활동시 일련의 면책사유(Entlastungsgründen)가 있는 무과실책임(verschuldensunabhängige Haftung)을 규정하고 있다.⁸⁾ 그러므로 책임근거적 활동과 환경침해 사이의 인과관계 규정을 두지 않았다.⁹⁾ 지침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환경침해가 발생하면 그의 법률효과는 제한되고, 지침안 제6조는 환경책임을 국가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침안 제7조에 의해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소관 행정청의 업무라고 규정하고, 제14조는 이해관계인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침안 제19조에 의해 지침의 소급적용이 배제되어 있다.

지침안 제정 목적은 손해를 유발시키는 원인자와 손해의 배제원칙의 실현(Realisierung des Verursacher- und des Schadensvermeidungsprinzips)이다.¹⁰⁾ 침해된 자연자원은 재생되거나 그와 관련된 비용에 의해 손해방지의 동기가 부여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지침안은 책임의 재정적 효과와 그 보장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¹¹⁾ 그러나 이 유럽공동체지침안

4)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S. 20, sub 6. 2.

5)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S. 10 ff.; U.S.C.§§ 9601-9675. 이 법은 운영이 정지된 폐기물소각장에 의한 토양과 수질오염에 대처하기 위해서 1980년에 제정되었고, 1986년 Superfund Amendments and Reauthorization Act(SARA, Pub. L. No. 99-499)에 의해서 보완되었다. 이 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Note, Developments in the Law-Toxic Waste Litigation, 99 Harv. L. Rev. 1458(1986). 이 법의 목적은 환경과 공공성을 침해위험발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오염된 토양의 원상회복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오염된 토양의 복구를 위해서 폐기물운반자와 폐기물생산자 그리고 폐기물처리장의 운영자의 엄격한 의무와 더불어 환경침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6)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S. 19, S. 22.

7)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S. 2; 환경(Umwelt)이라 함은 생태계(biologische Vielfalt), 하천(Gewässer), 토양(Boden), 지하(Unterboden) 등을 말한다(유럽환경책임지침 RiL 79/409/EWG v. 2. 4. 1979, RiL 92/43/EWG v. 21. 5. 1992-자연생태공간의 보존과 야생동물과 식물에 대해서 규정); 박원선, “공해와 법적 규제”, 대한민국 학술원 공해문제연구회, 1971, 제1집, 14면.

8)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S. 3.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781면; 임정평,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법정고시」, 1997. 9, 6면; 「채권각론」, 법지사, 1995, 762면;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9, 47면.

9)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S. 18.

10) Rehbinder,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3 Env. Liability, 85 f.(2000).

11) 지침안(Richtlinienvorschlag), S. 6 sub 4.

은 이전의 폐기물책임지침(Abfallhaftungsrichtlinie)에 비해서 다소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으나,¹²⁾ 환경책임의 의미와 그 침해위험은 아직 논란이 있다.

II. 환경침해의 개념

유럽공동체지침안의 중심에 환경책임의 개념이 있다. 이러한 개념과악의 과정 속에서 환경은 무엇이며, 이러한 환경의 침해는 언제 발생하는지 의문이다.

1. 보호의 객체로서 환경

지침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18호, 제20호는 환경침해의 개념체계 속에서 환경을 생태계(biologische Vielfalt), 하천(Gewässer), 토양(Boden), 지하(Unterboden)라고 규정하고 있다. 생태계(biologische Vielfalt)는 지침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조류보호와 동식물서식지 지침(Vogelschutz- und Flora-Fauna-Habitat-Richtlinie)의 부칙에 의해 보다 더 구체화되었다.¹³⁾ 이 부칙 속에서 181종의 조류종류와 35면으로 정리된 보호할 수 있는 생태계와 동식물종류가 문제이다. 생태계(biologische Vielfalt)는 회원국의 자연보호규정에 의해 제시되는 보호유지지역을 포함한다. 이러한 보호지역과 보호할 수 있는 동식물종류를 정리하고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보호를 위해 규정에 책임요건을 실시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간과할 수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 비실용적이고 법적 흠결을 가져와 장애가 될 수 있다.¹⁴⁾ 이로 인해 생태계의 보호객체는 개념상 혼재되어 필수적인 짜임새(Kompaktheit), 유연성(Flexibilität), 구체성(Anschaulichkeit), 그리고 방사의 효과(Ausstrahlungswirkung)를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하천(Gewässer)의 개념은 성공적이다.¹⁵⁾ 책임보호대상으로 담수 또는

12) Ab/EG Nr. C. 251 vom 4. 10. 1989, 3=BR-Drs. 528/89 S. 1, 11; 변경안 Ab/EG Nr. C 192 vom 23. 7. 1996, 6.

13) RiL 79/409/EWG v. 2. 4. 1979(야생조류종류보호지침: Abl. L 103 vom 25. 4. 1979, 1); RiL 92/43/ EWG v. 21. 5. 1992(자연생태계와 야생동식물보호: Abl. L 206 vom 22. 7. 1992, 7); Freytag/Iven, NuR 1995, 109; Gellermann, NuR 1996, 548; Rödiger-Vorwerk, Die FFH-Richtlinie der EU und ihre Umsetzung in nationales Recht, 1998.

14) 환경단체와 기업의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 Hattan, 1 Env. Liability 3, 4 f.(2002).

15) Wasser-Rahmen-RiL 2000/60/EG.

지하수 등을 포함한 지표수가 포함된다. 세번째 보호객체는 토양(Boden)과 지하(Unterboden)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환경위험활동으로 인한 환경침해로 발생하는 손해는 민사책임에 대한 유럽의회의 협정¹⁶⁾에 의한 환경의 정의로 방지될 수 있다. 환경은 공기, 물, 동식물 그리고 이러한 요소의 조화에 따른 자연자원을 말한다. 지침안에 의해서 추구되는 자연생태계, 야생조류, 동물과 식물의 구체화와 단일화는 유럽공동체의 지침과 회원국의 자연보호규정 등 부수적인 관련규정에 의해서 어렵지 않게 보장될 수 있다. 일반규정과 관련규정의 체계는 환경보호를 포괄적이고 충분하게 보장하고 있다.

2. 환경침해

환경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른 일정한 한계치의 도달(die Erreichung eines bestimmten Schwellenwertes)이 필수적이다.¹⁷⁾ 이것에 대해서 지침안은 다른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계(biologische Vielfalt)와 관련해서 손해란 지침안 제2조 제1항 제18호 a, 제2호, 제3호, 제5호, 제2항에 의해 조류보호와 서식지지침상 허용되는 않는 침해로 보존상태에 대한 해롭고 위험한 효과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환경 중심적 정리이다.

하천(Gewässer)과 관련해서 지침안 제2조 제1항 제18호 b, 제5호에 의해 손해란 환경상태의 악화(Verschlechterung des ökologischen Zustandes)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천의 분류는 그 감독과 개선을 위한 확실한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들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경직되어 흠결이 많은 단점이 있다.

토양오염(Bodenkontaminierung)의 경우 지침안 제2조 제1항 제18호 c와 제5호에 의해서 보호객체로서 토양의 침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로 인한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그 효과는 환경보호객체의 침해로 인한 책임한계치 뿐만 아니라 침해할 수 있는 개선조치의 범위까지 미친다. 왜냐하면 토양의 침해자는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이 아니라 위험을 방지하는 채무를 부담한다. 지침안은 토양을 아직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동시에 토양오염이 생태계 혹은 하천의 직접적인 위험을 가져오면 이들 객체의 보호를 위해서 지침안 제4조에 의해 예방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토양의 제한된 보호객체로서 대지와 토지는 통상적으로 사유재산이 될 수 있고, 소유권

16) 환경위험활동으로 인한 손해의 민사책임에 대한 유럽의회협정 제2조(Art. 2(10) der Konvention des Europarates über die zivilrechtliche Haftung für Schäden durch umweltgefährdende Tätigkeiten). PHI 1993, 196, 198.

17) AB/EG C 268/19 v. 19, 09. 2000, S. 21; AB/EG C 317/28 v. 6. 11. 2000, S. 29.

자는 책임의 주체로서 환경침해자도 될 수 있다. 책임의 한계를 인류의 공공복리와 연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토양은 포기할 수 없고 종국적으로 증식할 수 없는 환경자원으로서 암시적으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공공복리가 침해된다면 독일연방토양보호법 제2조 제3항에 의해서 손해배상 해야 한다.¹⁸⁾ 그러나 지침안이 제시한 것처럼 중요한 건강위험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치가 너무 높아서 토양의 보호가 소홀히 될 수 있다. 비거주 지역의 토양오염과 중대한 건강위험과 관련된 장기간에 걸친 오염물질의 누적에 따른 토양의 환경기능소멸이 고려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효율적이고 상호 관련된 환경책임 체계 내에서 보호목적물인 자연의 기능과 통일성을 지향하는 손해의 개념이 필요하다. 자연자원의 포괄적인 보호와 보장을 위해서 책임은 일반적으로 본질적인 침해와 연결되어야 한다. 환경재와 관련해서 본질적인 침해와 그로 인한 손해는 자연자원의 동화능력과 재생능력(Assimilations- und Regenerationsfähigkeit)이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되는 한 인정될 수 있다. 토양과 관련해서 공익을 침해하는 사적이용의 경우 귀책될 수 있다. 내용의 구체성과 바람직한 가치가 있는 통일성은 규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III. 책임요건

1. 무과실책임

운영자의 무과실책임은 지침안 제3조 제1항, 제4조, 제5조, 제7조, 부칙 제1조 등에 의해 특정되고, 다수의 지침의 직업활동에 규정되어 있다. 그 핵심은 허가가 필요한 시설의 운영, 허가가 필요한 물과 하천조절, 폐기물분류조치, 특정위험물질, 식물보호제와 생화학 생산품의 생산과 이용, 저장, 축진 등 그리고 위험물질의 축진 및 유전자미생물과 유기물의 이용이 문제이다. 무과실책임의 결정은 대부분 국내와 국가간 환경책임체계 속에서 이루어진다.¹⁹⁾ 통상적으로 환경침해에 관한 엄격한 책임은 포괄적인 비용절감에 기인한 손해방지를 보장하는 법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효율성에 있다. 사실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은 손해방지와 관련해서 양 체제가 긍정적인 손해방지조치를 하고 법원이 과실책임 체계 내에서 효율적인 과실의 척도를 행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한 동등하다.²⁰⁾ 그러나 위험책

18) 비판: Peine, DVBl, 1998, 157, 159.

19) §1 UmweltHG; §22 WHG; §107 (a) CERCLA; Cambridge Water Company v. Eastern Counties Leather plc. [1994] 1 All E. R. 53; Prieur, Droit de l'environnement, 4 éd. 2001, Nr. 1104.

임 만으로 동기를 형성하고 객관적인 공공복리의 기준을 넘지 않고 손해를 발생시키는 활동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²¹⁾

최근에 Bergkamp은 이러한 논증을 위한 연구 속에서 중요한 문제를 제시했다.²²⁾ 환경침해시 책임법은 명확한 인과관계, 침해행위와 책임사이의 큰 시간차가 없이 책임청구의 상대적이고 안정적 실현을 요건으로 손해의 과정이 충분히 조절될 수 있을 때 대체로 손해방지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통상적으로 주어진 보험보장법은 부수적으로 방지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무과실책임의 활동에 대한 완화된 효과가 무엇과 관련된 것인지 경험연구는 지금까지 그러한 관계를 증명하지 못했었다.²³⁾ 이러한 항변은 중요하나 과실책임과 위험책임이 환경침해의 제거를 위해서 적절한 책임체계 형성여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법의 유형적, 경제적 분석을 할 수 없다. 단순히 책임법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은 귀책의 원인을 필요로 한다. 민법과 보통법은 과실책임(독일민법 제823조 제1항에 의한 불법행위)과 무과실책임(위험책임, 엄격책임 등)에 의해서 특징지어진다. 무과실책임의 근거는 특별한 위험원의 형성이다.²⁴⁾ 권리의 객체에 의해서 야기되는 위험은 주의의무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발생시킨다. 공공이익을 위해서 위험이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야기된 손해가 무과실에 의해 귀책되면 정당화되어 진다. 책임은 위험의 허용가치(der Preis der Zulassung der Gefahr)이며, 정의가 기초이다. 위험의 근원은 환경위험을 유발하는 재료와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재료는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완전히 지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재료들이 환경책임을 유발하면 마땅히 무과실책임으로 귀책된다. 책임요소의 구체적 형성의 경우 먼저 책임을 어디에 연결시킬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는 손해의 근원, 시설의 운영, 환경위험활동, 환경위험재의 방출 혹은 보호목적물 혹은 환경매개체의 침해에 귀책시킬 수 있다.²⁵⁾ 지침안상 책임은 특정 환경위험활동에 연결된다. 환경위험활동에 대한 결정은 침해자에 대해서 책임법의 인과법칙과 책임법의 조절기능을 현실화한다. 위험책임의 근본문제가 제기된다.²⁶⁾ 독일에서는 환경위험책임의 경우 열거의 원칙(Enumerationsprinzip)에 있다고 잘 알려져 있다.

20) Schäfer/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 Aufl. 1995, 136 f.

21) Schäfer/Ott, a.a.O., S, 171 f.

22) Bergkamp, Liability and Environment, 2001, 86 ff.

23) Bergkamp, a.a.O., S. 129, 132; The Proposed EC Environmental Liability Regime and EC Law Principles, 6 Env. Liability 251, 260(2001).

24) von. Caemmerer, Reform der Gefährdungshaftung, 42, 15=Gesammelte Schriften, Band III, 1983, 239, 249; Kötz/Wagner, Deliktsrecht, 9. Aufl., 2001, Rn. 341.

25) Rehbinder, 3 Env. Liability 85, 87(2000).

26) Kötz, Gefährdungshaftung, in: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1982, 1779, 1798 ff.

지침안은 명확성과 통일성을 위해 목록화 하려고 했다. 파악된 활동들은 특성화되고 여기에 제시되지 않는 활동의 적용은 배제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나, 책임의 흠결과 불평등행위를 형성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해결책과 목록화, 일반 원칙은 전형적인 환경침해활동을 목록에 따라 파악하게 했고, 공개하게 했다.²⁷⁾

2. 면책사유

1) 불가항력

지침안은 불가항력(höhere Gewalt)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과 제3자에 의한 돌발적인 침해와 같은 기본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론에 따르면 보통의 위험이 아닌 조업과 관련이 없는 사건에 존재한다.²⁸⁾ 불가항력은 오늘날 객관적 이론에 의해 외부로부터의 사건(von außen herkommendes Ereignis)으로써 그 개시를 고도의 주의(größte Sorgfalt)에도 예견할 수 없고 방지될 수 없어야 한다.²⁹⁾ 군사적 충돌이나 피할 수 없고 예기치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환경침해는 지침안 제9조 제1항 a, b의 환경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환경침해가 제3자의 고의에 의한 행위로 발생했다면 지침안 제9조 제3항 a에 의해 운영자의 책임이 배제된다. 면책사유는 환경침해활동의 위험을 실현하지 않는 사례의 경우에 해당된다. 미국의 '종합환경책임보상법(CERCLA)'은 비교가능한 면책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³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항력은 손해발생의 원인이 될 때만 침해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하고, 면책근거는 불가항력과 환경위험활동이 함께 작용할 때 침해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US v. Alcan Aluminium Corp. 사건이 있다.³¹⁾ Alcan은 생산과정에서 환경유해물질인 구리, 크롬, 라듐, 주석, 아연의 유화액을 투입했다. 이러한 종류의 유화액이 약 200백만 갤런 이상이 터널, 지하시설, 지하수로, 석탄광산의 연결망을 거쳐 Susquehanna 강의 동쪽으로 연결된 관정(管井: Bohrloch)으로 침전되었다. 1985년 9월 폐기물이 허리케인 글로리아(Gloria)를 타고 Susquehanna 강을 오염시켰다. 이로 인한 폐기물수거비용은 130만불을 지출해야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Alcan을 제소했다. 이것에 대해

27) §111 UGB-ProfE(Kloepfer/Rehbinder/Schmidt-Aßmann u. Mw. v. Kunig, Umweltgesetzbuch, Allgemeiner Teil, 1990).

28) v. Caemmerer, RvglHWB IV, 248; Kötz, Haftung für besondere Gefahr, AcP 170, 1 ff.; Heck, a.a.O., S. 85.

29) BGH VersR 1986, 92; Deutsch, Unerlaubte Handlungen und Schadensersatz, Rdnr. 347.

30) Anderson/Glicksmann/Mandelker/Tarlock,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3. ed, 1999, p. 994-999.

31) 892 F. Supp. 648(M.D.Pa. 1995), aff'd, 96 F. 3d 1434(s. Cir. 1996)

Alcan은 강의 오염원인이 불가항력이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항변사유가 면책사유가 아니라고 기각하였다. Alcan에 의해 제시된 오염원인으로서 허리케인은 사실 “신의 행위(Act of God)”로 오염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2백만 갤런의 위험폐기물은 “신의 행위(Act of God)”를 통해서만 관정으로 침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침안도 같은 논리이다.

2) 규정에 따른 시설의 정상운영

시설운영자는 자체의 운영방법에 의해 활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손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³²⁾ Bergkamp는 시설운영자의 과실책임(Verschuldenshaftung)을 묻고 있다. 위험책임(Gefährdungshaftung)의 영역에서 규정에 따른 정상운영(rechtsmäßiger Normalbetrieb)을 면책사유로 인정한 것은 문제이다. 왜냐하면 위험책임은 바로 이행된 의무위반(Pflichtwidrigkeit)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조성된 위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이다. 위험책임은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두하는 장애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규정에 따른 정상운영시 환경침해에 따른 침해자의 면책은 유럽환경책임법의 확실한 경향이다. 그렇다면 자연이 사법상의 재화보다 덜 보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보호규정의 준수에도 불구하고 자연자원에 대한 침해가 존재할 수 있다. 국가가 불충분한 규정이나 혹은 침해자가 그의 환경위험활동에 기인하여 유발되는 책임채무자인지 결정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가 규정으로 환경침해방지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침해활동을 하는 자는 그의 행위로 인해 규정에 따라 귀책된다.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nicht substituierend) 국가책임도 고려될 수 있다. 제초제(Herbizide)와 같은 허용되는 환경위험제품의 투입의 경우 면책사유가 의미가 있다. 결론적으로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운영의 경우 환경침해자의 활동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 유럽공동체의 회원국은 환경법 속에서 다양한 환경보호기준을 가지고 있다. 규정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의 경우 어떤 요건 하에서 제3국에 허가(Genehmigung)가 부여될 것인지 국제사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법이 환경침해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결과를 예견하고 인용하게 할 때, 법에 의한 책임의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삼림이 비행장으로 전용된다면 환경자원의 훼손은 소송상의 책임의 원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종합환경책임보상법(CERCLA)’은 환경침해책임

32) Lübbe-Wolff, NVwZ 2001, 481, 490 f.; Hager, UTR 58(2001), 7, 16 ff.; Teubner/Wilke ZfRSoz 1984, 4; Gaines/Kimber, Redirecting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13(2001) 157.

을 제한하고 있다. 환경침해(ökologische Schäden)는 위의 법 제107조 (f)(1)에 의해 허가시설과 계획에 의해 야기되고 그로 인한 피해의 수용이 규정되고 허가될 때 면책된다. 손해가 허가교부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큰 경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허가에 의해 허용되는 침해로 인한 손해만 인정된다. 반면에 환경법상 환경침해의 예측할 수 없는 결과는 환경자원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허가 교부시 예상하지 못했던 물질로 인한 특별한 위험이 입증되면 면책된다.³³⁾ 규정에 따른 정상운영이 면책의 근거일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책임한계의 배경으로 명확하다.

3) 개발위험

환경침해자가 항변할 수 있을 것인지 간단치는 않지만, 그에 의해서 이용된 물질의 유해성이 학문과 기술수준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개발위험분배(Zuweisung des Entwicklungsrisikos)가 문제인데, 이는 제조물책임(Produkthaftung)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다.³⁴⁾ 지침안 제9조 제1항 (d)는 환경침해자를 개발위험으로부터 면책시켰다. 이와 같은 면책은 영국의 Rylands v. Fletcher에서 찾을 수 있다.³⁵⁾ 이 결정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면책되는 환경오염이 문제였으나 개발위험은 면책되었다. 독일의 환경책임법은 개발위험에 대한 면책근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³⁶⁾

환경침해자는 이용자로서 환경침해의 기본원칙에 따라 손해의 결과에 대해서 귀책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위험책임의 경우 환경침해자는 기본적으로 위험책임 하에 존재하고, 위험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위험의 실현의 사례 속에서 부족하다. 규정에 따른 정상운영의 면책사유와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규정에 따른 정상운영의 경우 책임이 성립하고 어느 정도의 의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임이 법규를 지향하고 있는지 문제이다. 반면 개발위험의 경우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인간의 지식을 지향해야 하는지 문제이다. 이것은 개발위험의 면책근거의 제한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한다.

개발위험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업의 위험연구활동을 증진시킨다는 데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환경침해자에 대한 추정이 이미 면책사유가 배제되었다는

33) Hager, NJW 1991, 134, 136 f.

34) Hager, Deutschland: Fehlerbegriff, Entwicklungsrisiko und Produktbeobachtungspflicht bei der Produkthaftung, PHI, 1991, 2.

35) Cambridge Water Company v. Eastern Countries Leather plc., 1994. 1, All E. R. 53.

36) Reh binder, in: Landmann/Rohmer, Umweltrecht Bd. 3, UmweltHG §1 Rdnr. 21, 2001, 2.

것을 전제한다. 그러한 면책이 추정되지 않으면 위험연구활동은 어렵게 되는 데, 이는 연구효과를 없게 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연구프로그램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³⁷⁾ 환경법전문가들은 예견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방지는 불가능하다고 한다.³⁸⁾ 그러나 개발위험으로부터 해방은 지침안 제9조 제2항에 남아 있는 과실책임(Verschuldenshaftung) 내에서 존재하는 위험물질감시의무(Schadstoffbeobachtungspflicht)를 통해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위험으로부터 환경침해자를 보호한다는 지침안의 결정은 수용할 수 있다. 결국 과실의 요소가 위험책임으로 흡수되고 책임의 무과실성이 유지되게 된다. 시설의 인식할 수 없는 하자로 인해 위험물질이 환경에 방출되면, 시설운영자는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귀책되게 된다.

3. 무과실책임

직업상 그러나 객관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환경활동으로 인한 생태계의 침해에 대해서 지침안 제8조는 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활동이 환경위험기준 내에 존재한다면 무과실책임을 근거와 필요성이 없게 된다. 한 예³⁹⁾로서 정유회사가 폐유를 폐기물업체에게 처리하게 했다. 폐기물업체는 폐유를 지하에 저장해 두었으나 그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었다. 이러한 도중에 폐기물업체가 과산되어 정유회사의 책임이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는 폐기물업체의 시설이 문제이므로 정유회사의 무과실시설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러나 정유회사가 폐기물업체를 선정할 때 신중하지 않았다면 귀책될 수 있다. 여기에 무과실 환경책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환경위험제조물책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식물보호제와 같은 제조물은 환경을 침해할 수 있다. 지침안 부록 I은 특정환경위험물질의 생산, 이용, 저장 등을 책임을 유발하는 환경위험활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위험을 유발하는 제조물생산과 사용에 대해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환경위험제조물사용자는 지침안 제3조 제1항과 부록 제1호에 의해서 야기된 손해에 무과실이어도 귀책된다. 책임의 정도는 활동의 위험성에 따라 조절

37) Bergkamp, 6 Env. Liability 251, 263 f.(2001).

38) Schäfer/Ott, a.a.O., S. 295.

39) BGH NJW 1976, 46.

된다. 물론 이용자가 제조업자의 지시와 규정을 지킨다면 통상 면책된다. 판례는 면책사유를 좁게 제시하고 있다. 허가되어 등록된 살충제가 규정에 따라 해당 공간영역에 사용될 경우 면책될 수 있다.⁴⁰⁾ 환경위험제조물의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은 환경침해장애사례의 경우 중요하다. 제조물사용자의 제한책임으로 인해 제조업자의 책임문제가 제기된다. 살충제와 같은 환경위험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어떤 요건 하에서 환경침해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는가? 지침안은 환경위험제조물의 생산과정을 환경책임을 유발하는 활동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제조업자의 제조물의 생산에 대한 책임사유는 환경위험제조물의 생산에 있어서 하자(Fehler)일 수 있다. 살충제에 의한 환경침해발생은 불충분한 설명에 의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환경에 큰 위험이 내제될 수 있다. 이러한 제조물의 하자에 의한 환경침해는 사실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⁴¹⁾ 축전기와 변압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한 회사가 PCB(Poly Chlorinated Biphenyl)생산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PCB는 지역의 하수를 오염시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PCB를 사용한 회사뿐만 아니라 문제의 PCB생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사실 PCB생산업체는 하자있는 목적물을 인도했으며 여기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하수오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IV. 인과관계

지침안은 인과관계입증을 규정하지 않았다. 불명확한 오염피해는 지침안 제3조 제6항에 의해 대체할 수 있는 손해의 적용영역에 해당된다. 다음의 사례는 현재의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⁴²⁾ 스위스의 Wallis주의 알루미늄공장은 대기에 불소(Fluor)를 방출했었다. 이 지역의 살구재배농가는 그 방출로 인한 수확량감소에 대해서 공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감정에 따르면 공장의 불소방출은 살구수확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례에서 인과관계입증이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스위스연방법원은 시설책임을 인정했다.⁴³⁾ 환경침해가 문제된다면 지침안에 의해 야기된 손해가 적용영역

40) U.S. v. Tropical Fruit, S.E., 96 F. Supp. 2d 71(D. Puerto Rico 2000); Rehinder, 3. Env. Liability 85, 87(2000).

41) Vgl. City of Bloomington v. Westinghouse Electric Corp., 891 F.2d. 611(7th Cir. 1989).

42) Vgl. BGE 109 II 304.

43) OGH ÖJZ 1990, 339.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가 의문되나 인과관계입증 규정은 없다.

그러나 환경책임지침은 인과관계입증규정을 포기하지 않았다.⁴⁴⁾ 환경유해물질에 의해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책임요소가 환경위험활동에 연결된다. 인과관계의 입증을 위해서 구체적인 손해의 적절성을 입증해야 한다.⁴⁵⁾ 손해와 환경침해활동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면 충분하다.⁴⁶⁾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입증의 감경은 손해의 원상 회복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의 방지를 보장하게 한다. 왜냐하면 이는 환경위험활동을 조절할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V. 원인자의 다수성

환경침해자는 손해에 대해 그가 야기하지 않았으나 야기할 수 있었을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청구되면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 화해에 의해서 해결될 수도 있지만 화해가 안 되면 평균적 정의의 원칙(das Gebot der ausgleichenden Gerechtigkeit)에 항변뿐만 아니라 책임의 보장성(die Versicherbarkeit der Haftung)을 어렵게 하는 과잉책임(Haftungsübermaß)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침안 제11조 제2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가해자에게 지분에 따른 책임을 입증하게 했다. 개별적인 손해의 지분의 조사시에 관대한 척도가 제시될 수 있다. 엄격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종합환경책임보상법(CERCLA)’에 의해 지분책임은 많은 논란이 있었던 Bell Petroleum회사 판결⁴⁷⁾에서 제시된 것처럼 그 의미가 크다.

세 회사는 연속적으로 다년간 크롬(Chrom)을 가공함으로써 폐기물에 의해 지하수를 오염시켰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야만 했다. 여기서 환경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었고 각 회사의 제조과정이 공개됨으로 인해 법원은 지분에 따른 책임의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한편 개별적으로 가해자가 해당 손해지분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침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청이 가해자를 연대책무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44) Reh binder, a.a.O., 85, 87(2000); Bergkamp, a. a. O., 251, 258(2001).

45) Vgl. Heine, in: Schränke/Schröder, StGB, 26.Aufl. 2001, Vorbem. §§ 306 ff. Rdnr. 3.

46) Calabresi, Concerning Cause and the Law of Torts, 43 U. Chi. L. Rev. 69(1975).

47) In re Bell Petroleum, Inc., 3F. 3d 889(5th Cir. 1993).

VI. 법적 효과

환경이 침해되면 지침안 제5조에 의해 관할청은 책임있는 침해자에게 필수적인 폐기물 처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환경침해의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면 지침안 제4조에 의해 필수적인 방지조치가 취하거나, 또한 검사할 수 있다.⁴⁸⁾ 환경침해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관할청은 필수조치를 취하고 지침안 제7조에 의해 그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경찰법상의 가해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⁴⁹⁾ 이론적으로 양 영역은 구분된다. 경찰법은 위험방지(Gefahrenabwehr)를 목표로 하고, 지침안의 규정은 손해방지(Schadensvermeidung)와 손해제거(Schadensbehebung)를 목표로 하고 있다.

VII. 환경개선의 목표와 실행

예를 들어 수자원의 오염처럼 생태계의 침해와 관련해서 지침안은 환경개선의 목적으로서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die Wiederherstellung des früheren Zustandes)을 규정하고 있다. 토지의 오염과 관련해서 지침안에 따르면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침해물질의 제거가 필요하다. 다양한 환경개선의 목표는 환경매체의 다양한 보호의 결과이다. 제한된 토지보호의 실질적 효과는 중요하다. 인간의 거주지가 아닌 폐기물처리장으로서 오염된 토지가 존재한다면 방수를 통해서 지하수를 보호하게 할 수 있다. 통일된 환경개선목표는 원상회복이다. 예를 들어 오염된 대지는 원래의 상태로 재생되어야 한다. 원상회복의 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조치가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침안은 제안된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된 미국의 경험을 주목하고 있다. 환경침해가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합의는 미국에서 찾아 볼 수 있다.⁵⁰⁾ 또한 환경침해의 장기간 피해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 회복되는지 논의되고 있다.⁵¹⁾ ‘종합환경책임보상법(CERCLA)’에 의해 장기간의 환경침해가 재정적으로 평가되어 침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⁵²⁾ 평균가치는 사용가치(use

48) Vgl. BGHZ 103, 129=JZ 1988, 560.

49) Würtenberger/Heckmann/Riggert,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4. Aufl., 1999, Rdnr. 299a.

50) Ohio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Interior, 880 F. 2d 432(D. C. Cir. 1989).

51) Grayson/Picker/Siros/Bettison, The Business Dilemma, 31 Env'tl. L. Rep. 11356(2001); Thomson, Valuing the Environment, 32. Env. L. 57(2002); Klaphake/Hartje/Meyerhaff, Die ökonomische Bewertung ökonomischer Schäden in der Umwelthaftung, 2002, 6 ff.

value)를 포함한다. 사용가치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방법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자연재화는 존재가치(gebrauchsunabhängiger Wert; nonuse value; existence value)를 갖는다. 이는 손해정산시(Schadensberechnung)에 쟁점이 된다. 존재가치과약을 위한 유명한 손해정산방법은 불확정가치판단(contingent valuation)이다.⁵³⁾ 침해된 자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손해의 지불여부가 조사되었다. 자원의 가치가 일정지불액에 상당하는지 문제되었다. 이것을 근거로 손해배상금이 정산된다. 정산의 근거는 가정적인 시장이다. 이 정산방법은 오하이오결정(Ohio-Entscheidung)에 의해서 인정되었다.⁵⁴⁾

미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환경침해를 청산하기 위하여 토양(Boden)의 경우, 기름오염방지규칙(Oil Pollution Act-Rules: OPA-Rules)에 의해 환경침해개선조치를 통한 보상적 원상회복을 시행해야만 한다.⁵⁵⁾ OPA-Rules에 의해 필수적인 개선조치확인을 위한 2가지 절차가 존재한다.⁵⁶⁾ 우선 침해된 자연재화의 환경급부는 새로 형성된 자원에 상응하는 급부에 의해 청산되어야 한다(Service-to-Service Approach: 급부접근법). 이러한 동등한 가치의 조사는 자연보호절차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특정평가방법인 등급에 따른 분류방법(Skalierungsverfahren)이 이용된다.⁵⁷⁾ 자연자원이 침해됨으로 인해 그에相当하게 사용될 수 없다면, 동등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복원계획에 따라 새롭게 형성될 자원이 평가된다(Value-to-Value Approach: 가치접근법). 환경침해로 인해 실질적으로 자원이 상실된다면, 형성해야 할 자원의 평가는 합리적인 시간이나 비용으로 해결될 수 없고, 복원계획에 따라 지불되어야 할 비용만이 근거로 될 수 없다(Value-to-Cost Approach: 비용접근법).

자원가치의 특징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불확정한 가치평가의 의미가 대두된다. 이미 존재하는 손해분류표에 파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⁵⁸⁾ 보호동식물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대체비용은 가치평가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체 환경시스템과 관련해서 자원의 침해성과 침해물질의 침해성의 등급에 따른 분류방법(Rankingsystem)으로 가치평가를 할 수 있다. 공동분석의 경우에 질문을 받는 자는 선호도조사시에 각각 환경재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⁵⁹⁾ 비재산적손해(Nichtvermögensschäden)는 헤아릴 수 없으나 비교할 수 있다. 이

52) Ohio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Interior, 880 F. 2d 432(D. C. Cir. 1989); Kennecott Utah Copper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Interior, 88 F. 3d 1191(D. C. Cir. 1996); Thomson, Valuing the Environment, 32. Env. L. 57, 61, 65 f.(2002); Klaphake/Hartje/Meyerhaff, a.a.O., S. 10 f.

53) Cross, Natural Resource Damage Valuation, 42 Vand. L. Rev. 269, 335(1989).

54) Ohio v. United States Department of Interior, S. 474-481; Thomson 32 Env. L. 57, 61, 78 ff., 2002.

55) Thomson 32 Env. L. 57, 65 ff.; Klaphake/Hartje/Meyerhaff, a.a.O., S. 16 ff.

56) Klaphake/Hartje/Meyerhaff, a.a.O., S. 16 ff.

57) United States v. Fisher(Fisher II), 977 F. Supp. 1193, 1198(S. D. Fla. 1997).

58) Rutherford/Knetsch/Brown, 22 Harv. Env. L. Rev. 51, 76 ff. (1998).

렇게 가치등급이 조사되고, 손해등급이 정해질 수 있다. 지침안은 OPA-Rules 시스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원상회복은 침해된 자연자원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휴식이나 부수적인 조치에 의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관할 행정청은 이러한 방법 등을 고려한다. 기간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침해는 개선조치로 회복될 수 있다. 원상회복개선조치의 확정시 자원의 기준에 따라 대체될 수 있다. 이것은 위에 설명한 급부접근법(Service-to-Service Approach)이다. 이러한 분류절차가 불가능하면 원상회복개선조치의 확정을 위해서 가치접근법(Value-to-Value Approach)과 비용접근법(Value-to-Cost Approach)에 의해 금전가치가 경제적 정산방법과 평가의 방법 속에서 정해질 수 있다. 미국의 손해배상표는 특히 회원국 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표준화는 손해액을 예견할 수 있어서 보장 받을 수 있다. 다수의 개선안 사이에서 관할청은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한다. 관할청은 유연하게 이익을 도모하며 우선적인 개선조치를 위해 우선권을 명령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관할청은 완전한 원상회복을 포기하고 부수적인 개선조치를 확정할 수 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협력의 원칙(Kooperationsprinzip)이 필요하다. 즉 관할청과 가해자는 규정에 따른 효율적인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환경개선을 위한 지침안의 규정의 기본으로서 유지될 수 있다. 목표는 침해된 자연자원의 원상태(ursprünglicher Zustand)로의 원상회복과 손해에 대한 동등한 가치형성이다. 원상회복은 금전배상 등의 조치보다 우선 행해진다. 손해배상보다 원상회복이 우선되는 것은 자연이 원상회복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원상회복조치의 시행은 참여자와 함께 환경보호를 위한 경험과 학습과정을 유발하게 한다.

VIII. 맺음말

환경책임법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전제조건으로서 환경침해현상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법적 효과와 관련해서 유럽공동체지침안은 이러한 것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반면에 환경침해의 개념과 책임요건, 인과관계입증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유럽공동체지침안은 유럽지침이나 국내법 그리고 환경책임법에 의한 명령으로 환경보호대상과 환경침해를 규정하고 있다. 자연이란 살아있는 조직이다. 이러한

59) Rutherford/Knetsch/Brown, 22 Harv. Env. L. Rev. 51, 84 ff. (1998); Klaphake/Hartje/Meyerhaff, a.a.O., S. 22 ff.

생태계에 침해가 존재하는지는 책임법에 제시된 문제이고 자연의 기능으로부터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인간의 조직과 비교하자면 건강침해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인 삶의 현저한 장애로 정의된다. 이에 대해서 환경침해는 자연자원의 적응능력과 재생능력 그리고 생활능력의 현저한 장애이다. 유럽공동체지침안은 환경위험활동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열거주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리스트 혹은 일반원칙에 의해 환경위험활동여부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면책근거인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 면책근거는 위험책임의 영역 내에서 위배되고 자연의 자체가치에 충분하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뢰보호는 개발위험의 면책근거에 의해 이루어진다. 환경책임의 핵심은 인과관계의 입증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그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손해의 발생과정의 복잡성과 보호대상의 민감성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환경침해의 경우 일단 기본적인 손해는 일반적으로 파악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결과손해와 장래손해는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 특수한 환경침해의 경우 환경책임법에 따른 책임유무를 결정하기에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다. 손해발생의 입증은 인과관계추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귀책의 정도가 다르다. 환경침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전적 대체보다 환경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주제어: 환경책임, 환경위험활동, 인과관계, 무과실책임, 열거원칙, 면책사유, 개발위험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6.
- 박원선, “공해와 법적 규제”, 대한민국 학술원 공해문제연구회, 제1집, 1971.
- 임정평, “환경오염에 대한 사법적 고찰”, 「법정고시」, 1997. 9.
- _____, 「채권각론」, 법지사, 1995.
- 최상호,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책임」,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9.

〈외국문헌〉

- Anderson/Glicksmann/Mandelker/Tarlock,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and Policy, 3. ed, 1999.
- Bergkamp, The Proposed EC Environmental Liability Regime and EC Law Principles, 6. Env. Liability 251, 253, 2001.
- _____, Liability and Environment, 2001.
- Calabresi, Concerning Cause and the Law of Torts, 43 U. Chi. L. Rev. 69, 1975.
- Cross, Natural Resource Damage Valuation, 42 Vand. L. Rev. 269, 335, 1989.
- Freytag/Iven, NuR 1995, 109 ff.
- Gaines/Kimber, Redirecting Self-Regul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13(2001) 157.
- Gellermann, NuR 1996, 548 ff.
- Grayson/Picker/Siros/Bettison, The Business Dilemma, 31 Env'tl. L. Rep. 11356, 2001.
- Hager, Deutschland: Fehlerbegriff, Entwicklungsrisiko und Produktbeobachtungspflicht bei der Produkthaftung, PHI, 1991, 2.
- _____, UTR 58(2001), 7, 16 ff.
- Hattan, The Environmental Liability Directive, 1 Env. Liability 3, 2002.
- Klaphake/Hartje/Meyerhaff, Die ökonomische Bewertung ökonomischer Schäden in der Umwelthaftung, 2002, 6 ff.
- Kloepfer/Rehbinder/Schmidt-Abmann u. Mw. v. Kunig, Umweltgesetzbuch, Allgemeiner Teil, 1990.
- Kötz, Gefährdungshaftung, in: Bundesminister der Justiz(Hrsg.), Gutachten und Vorschläge zur Überarbeitung des Schuldrechts, 1982.

Kötz/Wagner, Deliktsrecht, 9. Aufl., 2001.

Kommissio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Vorschlag für eine Richtlinie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Umwelthaftung zur Vermeidung von Umweltschäden und zur Sanierung der Umwelt, Brüssel, KOM(2002)17, 2002/0021(COD).

Lübbe-Wolff, NVwZ 2001, 481, 490 ff.

Note, Developments in the Law-Toxic Waste Litigation, 99 Harv. L. Rev. 1458, 1986.

Prieur, Droit de l'environnement, 4 éd. 2001.

Rehbinder, Towards a Community Liability Regime: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Environmental Liability, 3 Env. Liability, 2000, 85 f.

Rehbinder, in: Landmann/Rohmer, Umweltrecht Bd. 3, UmweltHG §1 Rdnr. 21, 2001, 2.

Rödiger-Vorwerk, Die FFH-Richtlinie der EU und ihre Umsetzung in nationales Recht, 1998.

Rutherford/Knetsch/Brown, 22 Harv. Env. L. Rev. 51, 76 ff., 1998.

Schäfer/Ott, Lehrbuch der ökonomischen Analyse des Zivilrechts, 2. Aufl. 1995.

Schränke/Schröder, StGB, 26.Aufl. 2001.

Teubner/Wilke ZfRSoz 1984, 4.

Thomson, Valuing the Environment, 32. Env. L. 57, 2002.

Würtenberger/Heckmann/Riggert, Polizeirecht in Badenwürttemberg, 4. Aufl., 1999.

【Zusammenfassung】

Der Vorschlag einer europäischen Richtlinie zur Umwelthaftung

Lee, Seng Woo

Das Schutz der Umwelt sowie die Schädigung der Umwelt bestimmt der Richtlinienvorschlag durch Verweisung auf EU-Richtlinien und nationales Recht, in der Sache also durch Verweis auf Umweltverwaltungsrecht. In dieser Akzessorietät liegt der entscheidende Mangel. Die Natur ist ein lebendiger Organismus als Schädigung darstellt, ist eine dem Haftungsrecht gleichsam vorgegebene Frage und muss von den Funktionen der Natur her beantwortet werden. Betrachten wir zum Vergleich den menschlichen Organismus: Noch nie wurde der Versuch unternommen, die Verletzung der Gesundheit durch Rückgriff auf andere Normen zu definieren. Vielmehr wird die Verletzung der Gesundheit aus sich heraus definiert und als erhebliche Störung der körperlichen, geistigen und seelischen Lebensvorgänge beschrieben. Entsprechend stellt sich der Umweltschaden als erhebliche Störung der Lebensfähigkeit, d.h. der Assimilations- und der Regenerationsfähigkeit einer Naturressource dar.

Was die Bestimmung des Haftungstatbestands anbelangt, knüpft der Richtlinienvorschlag zu Recht an die umweltgefährliche Aktivität eine stricte Haftung. Ob man die umweltgefährlichen Aktivitäten mit Hilfe des Enumerationsprinzips listenmäßig erfasst oder mit Hilfe einer Generalklausel, darüber lässt sich streiten. Inakzeptabel aber ist die Anerkennung des Entlastungsgrundes der Rechtskonformität. Der Entlastungsgrund der Rechtskonformität ist im Bereich der Gefährdungshaftung systemwidrig und trägt dem Eigenwert der Natur nicht hinreichend Rechnung. Der notwendige Vertrauensschutz wird durch den Entlastungsgrund des Entwicklungsrisikos geschaffen. Kernproblem der Umwelthaftung ist der Nachweis der Kausalität. Die Schwierigkeiten wurzeln in der Sensibilität des Schutzgutes sowie der Komplexität des Schadensentsprechungsprozesses. Bei Störfällen ist zwar der handgreifliche Primärschaden in der Regel einfach zurechenbar, für Folge- und Spätschäden gilt dies aber schon nicht mehr. Ein an den Besonderheiten der

Umweltschädigung orientiertes Umwelthaftungsrecht darf an diesen Schwierigkeiten nicht vorübergehen. Es muss ihnen vielmehr Rechnung tragen, wie es mit der Regelung versucht wurde, an den Nachweis der Schadenseignung eine Kausalitätsvermutung zu knüpfen.